



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[시행 2014.6.19.] [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3호, 2014.6.19., 타법개정]

문화체육관광부 (국제체육과) 044 - 203 - 3165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공원조성기본계획 승인신청서 등) ① 「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원조성기본계획의 승인 신청 및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원조성기본계획 (변경)승인 신청서에 따른다.

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원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및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원개발계획 (변경)승인 신청서에 따른다.

③ 「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에서 "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"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.

1. 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

가. 인구 수용, 토지 이용, 교통 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

나. 재원 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

다. 도로,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

라. 사업체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 또는 입주 시설물에 관한 사항

마.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·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및 사유

바.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기본(개발)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작성한 도면

사.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

아. 시설 운영계획(개발계획 수립자만 해당한다)

2. 변경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

가. 변경 사유서

나. 이전에 승인된 계획서에 변경내용을 표시한 자료

다.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

제3조(실시계획 승인신청서)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및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실시계획 (변경)승인 신청서에 따른다.

② 영 제5조제1항에서 "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"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.

1. 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

가. 자금계획서(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을 포함한다)

나.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

다.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

라. 단계별 조성계획서(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)

마.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·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, 물건조서 및 주민의 이주대책

바. 시설별 세부 운영계획(개발계획 수립자만 해당한다)

2. 변경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

가. 변경 사유서

나. 이전에 승인된 실시계획서에 변경내용을 표시한 자료

제4조(공원시설물의 무상 사용)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원시설물 일부의 무상 사용에 관하여는 그 공원시설물의 관리자와 태권도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따른다.

제5조(국기원·태권도진흥재단의 수익사업) 국기원이나 태권도진흥재단이 법 제19조제3항 및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중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6조(규제의 재검토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제2조에 따른 공원조성기본계획 승인 신청서 및 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: 2014년 1월 1일
2. 제3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및 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: 2014년 1월 1일

[본조신설 2013.12.31.]

부칙 <제173호, 2014.6.19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